

특허청 공고 제2019-198호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 및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9-20호)에 따라 2019년도 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 및 신규등록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 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특 허 청 장

## 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 및 신규등록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

### 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

#### I. 등록 업무

- 등록 업무분야 : 상표등록 출원 관련 선출원·선등록상표 및 기타 심사 참증 자료 검색·분석 등

#### II. 등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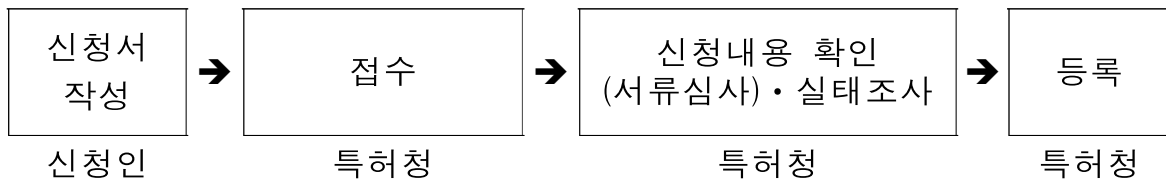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상표조사 전문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별첨 1】 참조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 다. 조사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고시 제8조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 Ⅲ. 등록 신청

-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별지 제6호의2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신청법인의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3.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
  4. 신청법인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
    -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등) 1부
    -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6.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7.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조사원의 서약서
- 종전의 고시(제2016-21호)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

## IV.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에 제출
2. 신청서류 등 서면 확인 및 미비 시 보완 요구
3. 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실시
4.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등록확인서 발급)

### 신규등록 전문기관 역량평가

#### I. 역량평가 개요

- (목적) 신규등록 전문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2020년 상표조사 사업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역량평가 실시
- (평가대상) 기간 내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및 역량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전문기관으로 최종 등록된 기관 소속 조사원 전원

#### [특허청 고시 제2019-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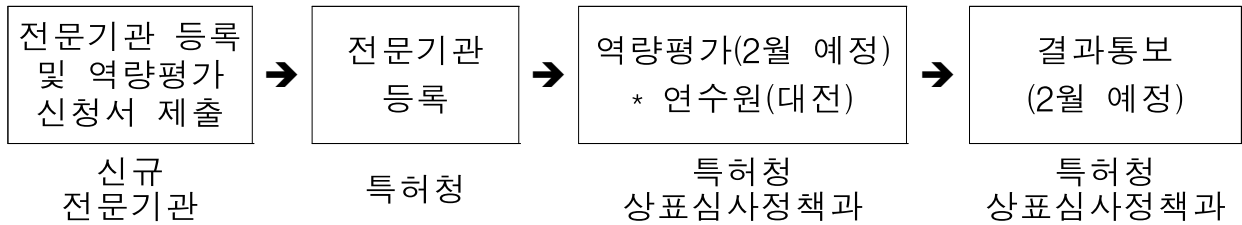
제17조(상표조사 전문기관 평가) ... (중략)...

- ③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 또는 분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내용) 상표등록출원 상표조사보고서 작성 능력
- (평가일시) 역량평가 접수 마감일 이후 확정('20년 2월중 예정)
  - ※ 신청기관 및 조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일을 확정하고, 역량평가 대상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전체일정을 통보
- (평가장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 ※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2(가정동 33)

- (전체일정) 사업공고에서 역량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기관 선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 예정



## II. 역량평가 상세내역

- (사전교육) 역량평가 장소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산실에서 5일 정도 심사시스템 활용 교육 및 체험 기회 부여
  - ※ 교육 참여는 자율적으로 시행
- (평가방법) 동일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조사원이 평가 대상 건에 대한 상표조사를 수행 후 조사보고서(조사·분석·법령적용) 제출
  - ※ 4문제 280분(1문제당 70분 배정)
  - ※ 부정행위 시 조사원이 속한 조사기관은 '20년도 사업에서 배제
- (평가기준) 역량평가를 통해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대상으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색·분석 충실성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예시) >

구분	점수(점)	평가내용
우수	91~95	▶ 질의어, 표장분석, 선행상표 조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령 적용, 식별력 및 유사 여부판단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
보통	86~90	▶ 충실하고 논리적이거나 표장분석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오탈자가 있고, 문장이 어색한 경우
	80~85	▶ 최종결과에 이상은 없으나 검색 등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최종결과에 이상은 없으나 판단 등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미흡	75	▶ 평가위원이 추가 검색 후 유사한 선행상표를 찾아낸 경우 ▶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식별력 판단 등이 미흡한 경우

- (평가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보통'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기관별 조사원 평균점수가 가장 상위인 순으로 선정
  - ※ 채점시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적용하고, 동점의 경우 우수에 속한 조사원이 많은 기관, 우수 평균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순위 결정

### Ⅲ. 신규 전문기관 조사사업 물량(연간)

○ (배분물량) 국내상표 조사사업 물량 : 약 24,340건(약 1,243백만원)

※ 상기 배분 예정 물량 및 예산은 향후 역량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배분기준) 원칙적으로 전체물량 중 예산 증가분에 해당하는 물량 범위 내에서 역량평가결과 상위 기관 순으로 차등 배분

※ 전문 등록기관 중 역량평가 결과 순으로 상위 3개 기관에 대해 물량을 차등 배분하므로 역량평가 결과 하위 기관은 물량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역량평가 결과 모든 기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량을 배분하지 않을 수 있음)

### Ⅳ. (공통) 등록신청 및 역량평가신청 접수 (우편 또는 방문)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년 2월 6일까지

※ 등록과 별도로 '20년 사업수행 물량 배정을 위한 역량평가 접수 마감일('20. 2. 6.)까지 평가 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신규 등록기관은 '20년 사업수행이 불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우편번호 : 35208)

※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를 반려함

○ 문의처

상표심사정책과 권도훈 사무관	042-481-8343
상표심사정책과 임준영 주무관	042-481-8312

(별표 1)

## 보안현황 점검표

업체명 :  
점검일 : . . .  
점검자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1. 관리적 보안체계	1.1 조직 및 담당자 지정	1.1.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N/A		O
		1.1.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N/A		O
		1.1.3 자체 보안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가?(CEO, 보안담당자, 선행기술조사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			N/A		O
	1.2. 규정 수립 및 절차 관리	1.2.1 보안 내규는 수립하였는가?			N/A		O
		1.2.2 보안 내규는 CEO결재를 거쳐 수립되었는가?		N/A	N/A		O
		1.2.3 반기 혹은 연간 국가보안 및 정보보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가?					
		1.2.4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 및 게시되어 있는가?			N/A		
		1.2.5 보안사고 예방 대책 및 보안 위규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O
		1.2.6 자체적인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는가?			N/A		O
	1.3 교육 및 훈련	1.3.1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N/A		O
		1.3.2 보안 교육 및 훈련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N/A		
		1.3.3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국가보안/정보보안)을 실시하는가?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1.3 교육 및 훈련	1.3.4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3.5	정보보안 담당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1.3.6	일반 조사원이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1.3.7	직원은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우편 수신시 열람을 금지하는가?					
	1.3.8	직원은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우편 열람시 위기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는가?					
1.4 점검 및 대책 마련	1.4.1	보안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가?(외부 용역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			N/A		○
	1.4.2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N/A		
	1.4.3	CCTV 운용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는가?			N/A		○
1.5 인원 및 위기 관리	1.5.1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N/A		○
	1.5.2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시 특허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N/A		
	1.5.3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외부인 출입 시 보안 담당자가 동행하여 이동하는 등 외부인의 방문과 관련 보안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N/A		○
	1.5.4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화재 발생 시 대책 등)			N/A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2. 물리적 보안체계	2.1. 시설보안	2.1.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N/A	N/A		O
		2.1.2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용 사무실은 타 업무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N/A	N/A		O
		2.1.3	통제구역·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1.4	특허청 업무망과 연결된 PC가 위치한 구역 전체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N/A	N/A		O
		2.1.5	통제구역에 별도의 출입통제장치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1.6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의 출입자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N/A	N/A		O
		2.1.7	전용 사무실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N/A		O
		2.1.8	전용 사무실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N/A		O
		2.1.9	출입문, 회의실 등의 공간을 타 기관·업체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N/A		O
	2.2 문서보안	2.2.1	VPN실(출원서 전송실)이 별도로 마련되고,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용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2.2	VPN실에 미공개 출원서 전자파일의 보관을 위한 착탈식 하드디스크와 비밀금고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2.3	전용 사무실에 특허관련 서류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2.4	미공개 출원서에 대한 관리대장 및 보관전용 2중 잠금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3. 기술적 보안체계	3.1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3.1.1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N/A		○
		3.1.2 침입탐지/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N/A		
		3.1.3 회선 암호화 장비(또는 암호화 SW) 구축 또는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가?		N/A	N/A		○
		3.1.4 서버 보안을 위한 SW 또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N/A		
		3.1.5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또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N/A		
		3.1.6 미공개 출원 출력시 매 용지마다 출력일시, 출력자 등을 표시하는 디지털권한관리프로그램(DRM)이 설치되어 있는가?			N/A		○
	3.2 정보 시스템 점검 관리	3.2.1 정보자산 목록을 식별하고 현행화 되어 있는가?			N/A		○
		3.2.2 정보보호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
		3.2.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N/A		○
		3.2.4 상용 메일, web hard 등 업무 외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되고 있는가?			N/A		○
		3.2.5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
		3.2.6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가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N/A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3.3 PC 및 주요 데이터 관리	3.2.7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가?			N/A		O
	3.2.8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과 비조사원간에 네트워크를 분리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N/A		O
	3.2.9	특허업무 관련 공간 및 시스템 대상 비인가 유·무선 인터넷(Wibro, HSDPA, 스마트폰 테더링, 와이파이 등)을 통한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을 금지하는가?			N/A		O
	3.3.1	특허청 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한 단말 PC에 대한 접근통제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N/A		O
	3.3.2	인터넷 검색 PC내 자료 유출차단을 위한 보안통제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N/A		O
	3.3.3	인터넷PC내 특허업무 관련 중요 자료의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O
	3.3.4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N/A		O
	3.3.5	PC 등 단말기 대상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한 백신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이상 검사를 수행하는가?					O
	3.3.6	업무망 및 인터넷망 PC 등 단말기 대상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O
	3.3.7	업무망 및 인터넷망 PC 등 단말기 대상 응용프로그램 (한글, MS Office, 아크로벳 등)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O
3.3.8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N/A		O	
3.3.9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O	
4. 개인정보보호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4.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였는가?					
	4.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4.4	개인정보 취급자(조사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가?					
	4.5	PC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실시하는가?					
5. 기타	5.1	(상기 항목 이외) 특허청에서 권고하는 보안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비고란 “O” 표시는 최초 등록 시 필수 점검 항목이며, 이후 보안실태점검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점검 함

- ※ 보안현황 점검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주의”, “미흡” 중 하나로 평가하며,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해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요건인 보안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특허정보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
- ※ 물리적 보안체계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보안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준수해야 함

## 서 약 서

본인은 상표심사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표법」 제216조(상표 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금지)에 의거, 상표심사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도 아니된다.(단,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6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만약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자산평가액)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상표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상표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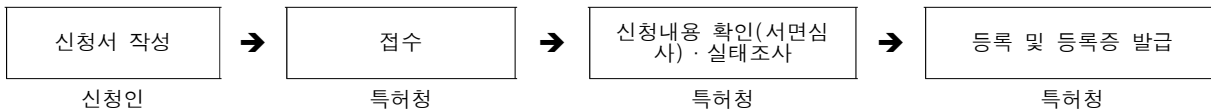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표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2. 「상표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4. 「상표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별지 제3호】 역량평가 신청서

## 역량평가 신청서

신청 기관명 :

역량평가 참가 조사원 명단

연번	성명	사번	생년월일	상표조사경력(년)
소계	총 0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첨 1】

## 상표조사 전문기관 전산검색용 장비

○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특허넷)』을 이용하기 위해, 상표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전산검색용 장비 구축 필요

- 개인 전산장비(PC/프린터/클라우드 접속 지문입력장치 등)
- 특허넷 시스템 접속, “IP스캔, L2스위치”(전문기관 위치)
- 특허넷 시스템 연결을 위한 전용회선(회선속도 10Mbps이상)
- 특허넷 시스템 접속, 보안시스템 장비\*(방화벽, SSL VPN, L3스위치 등)

\* 보안시스템 장비는 특허청 내에 설치되며, 특허청이 지정한 보안장비 설치·운영 위탁 업체(부가통신사업자)와 장비 사용에 대한 운영 위탁 계약 필요

< 특허청-상표조사 전문기관 망 구성도 >

